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이민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72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4월 27일

발 의 자: 이민석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 석, 박성연, 박승진, 박영한, 박칠성, 박환희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이경숙, 이병윤, 이봉준, 이상욱, 이성배, 이원형, 이은림, 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 이희원, 임춘대, 장태용, 채수지, 최민규, 최유희, 최진혁, 홍국표, 황유정 의원(58명)

### 1. 제안이유

- 정비사업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차공간 및 공공공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정비기반시설에 공용주차장, 광장 등을 추가하여 지원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.
- 「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에서 정비사업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으로 구분을 명시하여, 해당 계획의 수립·고시 때까지만 정비사업 유형을 구분 운영하도록 한 유효기간 조항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대상에 광장, 공공공지, 공용주차장을 추가함(안 제52조).

나. 「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고시 때까지 정비사업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한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함(안 부칙 제2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2항제2호나목 중 “녹지”를 “녹지, 공공공지, 광장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공용주차장

조례 제6899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2조(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(이하 “설치비용”이라 한다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소공원, 어린이공원 및 <u>녹지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10px 0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다. (생략)</p> <p>③ ~ ⑨ (생략)</p> <p>부 칙 &lt;제6899호,2018.7.19&gt;</p> <p>제1조(생략)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제3조 및 제6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비사업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,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, 주거환</p>	<p>제52조(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<u>녹지</u>, <u>공공공지, 광장</u></p> <p>다. <u>공용주차장</u></p> <p>라. (현행 다목과 같음)</p> <p>③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 칙 &lt;제6899호,2018.7.19&gt;</p> <p>제1조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경개선사업 및 관리형 주거환경  
개선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  
는 사항은 「2030 서울특별시  
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 
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때까지  
그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~제36조(생략)

제3조~제36조(현행과 같음)